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싱크탱크, KINU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Online Series

2023. 08. 30. | CO 23-26

국경 개방과 북한 주민 인권 침해

이 규 창(인권연구실장)

북한이 국경 개방의 대상과 폭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 침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첫째, 북한 해외노동자, 유학생, 주재원들이 귀국을 하게 되면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에 따라 사상·양심의 심각한 침해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비법국제통신죄, 군중신고법 등에 따라 북중 접경지역에서의 탈북 관련 통화·접촉 행위, 브로커 등을 통해 금품 등을 건네주는 행위, 북한 초소와 군인 등을 촬영하는 행위가 처벌될 우려가 크다. 셋째, 중국이 제정한 법규에 의한 북한 주민 인권 침해도 매우 우려스럽다. 중국이 2021년 10월 23일 제정한 육지국가경계법은 탈북을 시도하는 북한 주민에 대하여 자국 경찰이나 군인의 무기 사용을 합법적으로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3년 8월 27일 북한 국가비상방역사령부는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귀국 승인을 통보하였다.¹⁾ 발표 내용을 보면 전면적인 국경 개방이라기보다는 해외 체류 북한 주민들의 귀국이라는 제한적 목적의 국경 개방으로 판단된다. 향후 국경 개방의 인적·물적 대상과 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북한과 중국은 2020년을 전후하여 북한 주민의 인권과 관련된 여러 법규를 제정하였다. 이 법규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과정에서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 침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1) “국가비상방역사령부 통보,” 『조선중앙통신』, 2023.8.26.

귀국 주민의 사상·양심의 자유 침해

북한은 2020년을 전후하여 사상통제, 정보통제 목적의 여러 법규를 제정하였다. 먼저, 북한은 2019년 「군중신고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24개의 범죄 및 위법행위에 대해 신고하도록 하고(제15조),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벌과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있다(제34조, 제35조). 사상·정보 통제와 관련하여서는 ‘적대방송을 시청하거나 적지물을 보관, 이 용하면서 그 내용을 유포하는 행위,’ ‘불순출판선전물들을 들여오거나 제작, 복사, 보관, 유포, 시청행위’가 신고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제15조 제6호, 제9호). 이후 북한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2020년), 「청년교양보장법」(2021년), 「평양문화어보호법」(2023년)을 연이어 제정하였다. 특히,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반동사상문화를 배격하는 것이 사회주의 사상을 고수하고 사회주의 제도를 굳건히 수호하기 위한 필수적 요구임을 강조하고 있다(제3조). 그러면서 반동사상문화배격 질서 위반자에 대해서는 다른 북한 법규에서는 볼 수 없는 ‘어떤 계층의 누구이든 이유 여하에 관계없이’ 엄중성 정도에 따라 ‘극형’에 이르기까지의 엄한 법적 제재를 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7조).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최고 사형까지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28조, 제29조).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 해외노동자, 유학생, 주재원들이 귀국을 하게 되면 이 같은 법규들의 집행 과정에서 사상·양심의 심각한 침해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귀국한 북한 주민들이 사상교육과 처벌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언론 매체의 보도는²⁾ 이 같은 전망과 궤를 같이한다.

탈북 관련 통화 접촉 및 시설물 촬영행위 처벌

김정은 시대의 북한은 탈북 통제 및 처벌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2009년에는 형법을 개정하여 벌금형을 추가,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 위반자에게 적용하였다. 북한은 탈북행위를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 가운데 하나인 조국반역죄로 간주하여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2015년 「형법」 개정을 통해서도 비법국제통신죄를 신설하였다. 2019년 제정된 군중신고법에는 탈북 관련 처벌 행위가 보다 세분화·확대되어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첫째, ‘다른 나라 사람과 비법적으로 통화하거나 만나거나 돈 또는 물건같은 것을 주고 받는 행위’가 신고 대상 행위 가운데 하나로 명시되어 있다(제15조 제7호). 북한 형법이 탈북 관련 통신만을 처벌 대상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해 군중신고법은 통화 외에

2) “본국 송환 북 주민, 사상교육·처벌 직면 우려,” 『자유아시아방송』, 2023.8.24., <https://www.rfa.org/korean/news_indepth/nkchinaborder-08242023144152.html> (검색일:2023.8.28.).

접촉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 행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군중신고법은 ‘돈 또는 물건같은 것을 주고 받는 행위’도 신고 대상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남한에 정착해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브로커 등을 통해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금품 등을 전달하는 것이 북한 당국에 알려지면서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둘째, 군중신고법은 ‘군사시설을 비롯한 국가적으로 중요한 대상물과 시설물, 나라의 권위와 위신을 훼손시킬 수 있는 것을 촬영하는 행위’도 신고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제15조 제8호). 이는 북중 접경지역에서 북한 초소, 북한 군인 등을 촬영하는 행위를 북한 당국이 북한의 권위와 위신을 훼손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통제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국경 봉쇄로 급감하였던 탈북민 수가 국경 개방으로 점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과정에서 북한 형법과 군중신고법에 의한 탈북 관련 통화·접촉 행위, 브로커 등을 통해 금품 등을 건네주는 행위, 접경 지역에서의 시설물 촬영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탈북 시도 북한 주민에 대한 중국 경찰·군인의 무기 사용

북한 법규뿐만 아니라 중국이 제정한 법규에 의한 북한 주민 인권 침해도 우려된다. 중국은 2021년 10월 23일 「중화인민공화국 육지국가경계법(中华人民共和国陆地国界法)」을 제정하였다. 육지국가경계법은 모두 6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인접국가들과의 육지국경 획정 및 점검, 육지국경 및 접경지역 관리, 육지국경 업무의 국제협력, 법적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육지국가경계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제62조). 북한 주민의 인권과 관련하여 우려스러운 조문은 제38조이다. 동 조는 “어떠한 누구도 불법적으로 월경하는 것을 금지한다. ... 불법 월경자가 범죄를 저지르거나 체포를 거부하거나 기타 폭력을 행사하여 타인의 신변과 재산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법 집행요원은 법에 따라 경찰 장비 및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³⁾ 탈북을 시도하는 북한 주민에 대한 자국 경찰이나 군인의 무기 사용을 합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탈북자 보호에 역행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중국은 자유를 찾아 탈북하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무기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3) 第三十八条

禁止任何个人非法越界。

非法越界人员被控制后, 由公安机关等主管部门处理; 非法越界人员为武装部队人员的, 由有关军事机关处理。

非法越界人员行凶、拒捕或者实施其他暴力行为, 危及他人人身和财产安全的, 执法执勤人员可以依法使用警械和武器。

<표 1> 북한 법규의 탈북 관련 처벌 규정

구분	내용
<p>「형법」 (2022.5.17. 개정)</p>	<p>제42조(벌금형) 벌금형은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물질적 제재를 가하는 형벌이다. 벌금형에 따르는 벌금액수는 범죄행위의 엄중성정도에 따라 재판소가 정한다.</p> <p>제63조(조국반역죄) 조국반역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노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p> <p>제260조(국경비법출입죄) 국경을 비법적으로 출입한 자는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국경을 비법적으로 출입한 행위가 엄중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p> <p>제261조(비법적인 국경통신죄) 비법적으로 국경통신을 한 자는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국제통신을 한 행위가 엄중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p>
<p>「군중신고법」 (2019.4.28. 제정)</p>	<p>제15조(신고할 내용)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다음과 같은 범죄 및 위법행위에 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7. 다른 나라 사람과 비법적으로 통화하거나 만나거나 돈 또는 물건같은 것을 주고 받는 행위 8. 군사시설을 비롯한 국가적으로 중요한 대상물과 시설물, 나라의 권위와 위신을 훼손시킬 수 있는 것을 촬영하는 행위</p> <p>제34조(행정적책임)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있는 자에게 정상에 따라 해당한 행정적책임을 지운다. 1. 범죄 및 위법행위에 대하여 알면서도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2. 거짓신고를 하였을 경우 3.~6. 생략</p> <p>제35조(형사적책임) 이 법 제34조의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책임있는 자에게 정상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p>

©KINU 2023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통일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